



국회, 기부연금제도 입법 추진

이상우 수석연구원

■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법률안이 지난 7월 11일 국회에 제출됨.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수령한 연금액에 소득공제 또는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음. 향후 기부 연금제도 도입은 노후불안으로 기부를 망설이는 기부 대기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■ 여야 국회의원 12인(김관영의원 대표발의)은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연금 법률안을 국회에 2016년 7월 11일 제출함.

-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은 4년전 보건복지부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.
- 지난 1월에는 기부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2016년 중 기부연금제도 도입 계획¹⁾을 밝히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향후 기부연금제도 도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

■ 기부연금제도는 개인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비율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.

- 제도 도입 배경은 실제 기부 모금현장에서는 전 재산을 기부하려는 의사가 있으나 기부 이후 노후 생활 불안 등으로 인하여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.
- 최근 기부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부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에서 민간

1)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016년 중 기부연금제도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(연합뉴스, 2016.1.27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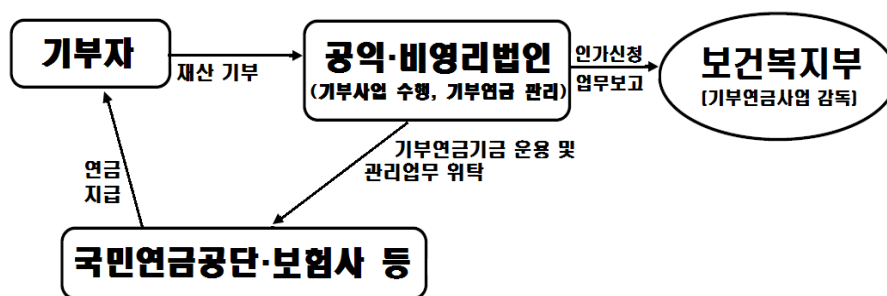
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장기적 차원에서 복지재원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.

■ 기부문화가 오래전부터 잘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부연금제도가 정착되고 있음.

- 미국은 기부문화 장려정책에 따라 기부금 총액이 2013년 기준으로 3,352억 달러로 GDP 대비 2%를 차지하고, 전체기부 중에서 개인기부가 71.8%를 차지할 정도로 기부문화가 발달함.
 - 1843년에 도입한 미국의 기부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150억 달러를 상회하며, 기부연금 수령자는 총 9,385명으로 평균 수급연령 79세, 평균 14년간 연금을 받고 있음.
- 캐나다는 GDP 대비 기부율이 5.3% 수준으로 기부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한 국가임.
 - 캐나다 기부연금은 60세부터 수급자격이 발생하고, 기부자 본인, 배우자, 자식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며, 수령한 연금은 부분 또는 전부가 면세됨.
 - 기부연금 재원관리는 기부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생명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연금상품을 구입하는 등의 보험방식이 있음.

■ 동 법안에서 기부연금제도 구조는 <그림 1>과 같이 우선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금모집자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할 경우 기부연금 약정에 따라 그 재산 일부를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사 등이 운영관리 하여 기부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체계임.

<그림1> 기부연금제도 체계



자료: 기부연금법률안(2016.7.11) 요약

■ 기부연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 모집자격을 공익법인·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, 기부연금을 조건부로 하는 기부금 모집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.²⁾

- 기부자는 기부모집자와 기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기부연금 재원은 기부금의 50% 범위 내에

2) 제2조 1항 5호, 제4조 1항 관련

서 기부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도록 함.³⁾

- 연금 지급기간은 기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 7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하고 기부자가 특정인을 연금수급자로 지정할 경우 최장 30년 이하로 제한함.⁴⁾
-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연금재원의 운용을 국민연금공단, 보험회사, 금융투자회사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은 운용 및 기부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.⁵⁾
- 기부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미지급 기부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잔여 기부연금 재원을 기부 모집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다시 기부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.⁶⁾

■ 기부연금제도 도입은 잠재적 기부자에게 재산의 사회환원과 노후생활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[kiri](#)

3) 제5조 1항, 2항 관련

4) 제10조 1항, 2항 관련

5) 제8조 관련

6) 제15조 1항 관련